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863호 2022. 6. 15.(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 2022-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사항 고시(더샵 포르시엘 2차) 2
- 거창군 고시 제 2022-70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4
- 거창군 고시 제 2022-71호 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22-885호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6
- 거창군 공고 제2022-894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9
- 거창군 공고 제2022-921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 2022-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9일

거창군수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1)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더샵 포르시엘 2차)

2) 사업주체

가. 상호 : (주) 무궁화신탁

나. 대표자 : 권준명

다.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변경)

가.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23,054㎡

다. 연면적 : (기정) 75,716.1250㎡ → (변경) 75,907.5732㎡ 증) 191.4482㎡

라. 규모 : 아파트 6동(443세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마. 형별 : 84A형(전용면적 84.9694㎡), 84B형(전용면적 84.7560㎡)

84C형(전용면적 84.6131㎡), 109형(전용면적 109.3039㎡)

119형(전용면적 119.4428m²), 141형(전용면적 141.8036m²),
158형(전용면적 158.7591m²)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5월 ~ 2024년 9월(29개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159	당초	59,937m ²	4,945m ²	5,060천원	2021. 1. 17. ~ 2022. 12. 31.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196	정 태 *
		변경	59,937m ²	4,850m ²	9,240천원	2021. 1. 17. ~ 2022. 12. 31.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2】

2022년 6월 13일

거창군수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410-22 등 7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5길 198-1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추진중인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0.

거창군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예정) : 2022년 ~ 2023년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1일원	거창군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고 또는 개별통지문 발송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6. 10. ~ 2022. 6. 24.(초일 불산입 14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33, 사업시행자)

- 보상 사무소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길 13-6, 2층(국토보상원)

(☎055-756-4440, F:055-756-4442, 보상업무 및 물건누락 등 문의)

다. 열람사항

- 토지·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 여부) 및 소유권과 권리에 관한 사항 등
- 라. 이의신청 방법 : 거창군 또는 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 감정평가법인선정(주민 추천 등)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감정평가법인의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및 공탁

6. 기타사항

- 가. 상기 내용은 향후 일정 및 계획, 법령,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나.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토지 및 물건의 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 기타 사유에 의한 미수령자는 본 공고를 송달로 갈음함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인)	접수방법 : 유선, 방문
			접 수 자 : (인)
	주 소		
	연 락 처		
사업명칭			
이의신청대상 소재지 및 종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상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5.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거창 스포츠파크	종합 운동장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 일원	126,377	감)33,388	92,989	경고222호 (’79.11.21.)	
변경	4	양평생활 체육시설	체육시설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일원	29,994	증)32,659	62,653	거고96호 (’11.12.15.)	

나.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거창 스포츠파크	○ 면적변경 - 위치 :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 일원 - 면적 : 126,377㎡→92,989㎡ (감33,388㎡)	○ 기정 조성계획과 다른 조성현황을 현황여건에 맞춰 구역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	양평생활 체육시설	○ 면적변경 - 위치 :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일원 - 면적 : 29,994㎡→62,653㎡ (증32,659㎡)	○ 기정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이용현황을 현황여건에 맞춰 구역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함

다.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세부세설명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680	감) 5,691	92,989	
운동 시설	소 계			53,626	감) 5,899	47,727	
	①	①	주경기장	37,860	감) 1,090	36,770	
	②	-	체육관	2,542	감) 2,542	-	양평생활 체육시설로 이전
	③	②	보조경기장	10,540	감) 963	9,577	
	④	③	농구장	1,190	증) 190	1,380	
	⑤	-	수영장	1,494	감) 1,494	-	양평생활 체육시설로 이전
공공 시설	소 계			45,054	증) 208	45,262	
	-	-	주차장	4,304	증) 3,411	7,715	
	-	-	도로 및 녹지	40,750	감) 18,165	22,585	
	-	-	광장	-	증) 14,962	14,962	

라. 양평생활체육시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

■ 양평생활체육시설 토지이용계획(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세부세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994	증) 32,659	62,653	
체육 시설	소 계			8,211	증) 21,486	29,697	
	①	①	전천후게이트볼장	1,385	증) 129	1,514	
	②	②	게이트볼장	2,313	감) 104	2,209	
	③	③	배드민턴장	636	감) 222	414	
	④	④	테니스장	3,749	증) 4,921	8,670	
	⑤	-	씨름장	128	감) 128	-	
	-	⑤	군민체육센터	-	증) 2,586	2,586	양평생활 체육시설에 이전
	-	⑥	실내체육관	-	증) 2,411	2,411	양평생활 체육시설에 이전
	-	⑦	족구장	-	증) 5,760	5,760	
	-	⑧	인라인장	-	증) 3,470	3,470	
	-	⑨	다목적구장	-	증) 2,663	2,663	
편익 시설	소 계			2,833	증) 4,535	7,368	
	⑥	-	휴게시설	99	감) 99	-	
	⑦	-	파고라	97	감) 97	-	
	⑧	⑩	주차장	2,591	증) 4,512	7,103	
	⑨	⑪	화장실	46	증) 29	75	
	-	⑫	테니스협회사무실	-	증) 190	190	
기반 시설	소 계			18,950	증) 6,638	25,588	
	⑩	⑬	다목적광장	3,711	증) 643	4,354	
	⑪	⑭	진입도로	672	증) 5,245	5,917	
	⑫	⑮	보행자도로	369	증) 1,180	1,549	
	⑬	⑯	녹지	14,198	감) 430	13,768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면
으로 제출
5. 관계도면 : 실음 생략(열람장소 비치)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바랍니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시설의 이용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공시설 이용 요건 완화 규정 신설(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6. 15. ~ 2022. 7. 5. / 20일간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7. 5.(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우) 50147

○ 전화 : 055)940-8151, FAX : 055)940-8229

이메일 : agri907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u>다만, 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u>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p>③ (생략)</p>	<p>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u>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u>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p>③ (현행과 같음)</p>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나. 관련조문 : 제2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세출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합계
군비	185	185	185	185	185	925

3. 관련 의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 925백만원
 -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작성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